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의 상향입법〉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27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제2200727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의 상향입법(안 제10조제1항각호)	2
※ 참고자료	
참고 1 광역도로 사업 현황	8
참고 2 광역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기준	9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2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의 상향입법(안 제10조제1항각호)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 제외, 이하 같음)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 ----- ----- ----- <u>다음</u> <u>각 호의 구분</u> ----- -----.
<신 설>	1. <u>광역도로: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u>
<신 설>	2. <u>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해당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u>
<신 설>	3. <u>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공영차고지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해당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② ~ ⑩ (생략)	<u>30퍼센트</u> 4.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u>50퍼센트</u> 5.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u>30퍼센트</u> ② ~ ⑩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0조제1항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²⁾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 ⑩ (생략)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 시행령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국고 보조 비율 】

시설명	광역도로	광역철도역 주차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환승 및 복합 환승센터
국고지원기준	50%	30%	30%	50%	30%

※ 광역철도(시행령 제13조): 국고 70%, 다만, 서울특별시는 50%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 국고 보조 비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광역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를 할 때 단위 사업 당 1천억원의 상한 기준을 적용³⁾하여 보조액을 결정하고, 1천억원 초과 시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 비율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임의로 보조액을 결정하여 지원함⁴⁾으로써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광역도로 예산편성 기준(기재부 내부 기준)

- (연장 기준) 수도권 : 5km, 비수도권 : 10km 이내
- (총사업비 기준) 2,000억원까지 국비 50% 보조, 2,000억원 초과 시 국비 25% 보조

3)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127~128) 중 ‘지방비 부담분 초과 우선 투자 시 국비 보전’ [별표]

[별표] 재해예방 및 SOC사업

소관	사업명	회계	보조율
국토부	지방하천정비	일반	50%
행안부	재해위험지역정비	균특	50%
국토부	광역도로 건설	지특	50% (총사업비 2,000억원 초과 사업비는 25%)
국토부	도시철도 건설	교특	서울 40%, 지방 60%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공사비의 70%(단, '15년 기준 계속사업은 90%)

4) 정부는 2001년 12월 광역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 시 보조금 상한을 500억원(총사업비 1,000억원까지)으로 설정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이후 2008년 10월 이를 1,000억원으로 상향(총사업비 2,000억원까지)한 바 있음.

< 예산지원 기준 변화 >

시기	연장제한	총사업비	비고
'01.12월	수도권 5km 지방 10km	1,000억원(국고 500억원) 이내	국회심의시
'08.10월		2,000억원(국고 1,000억원) 이내	
'15.11월		2,000억원 이내분 : 50% 2,000억원 초과분 : 10%	
'16.11월~		2,000억원 이내분 : 50% 2,000억원 초과분 : 25%	

자료: 국토교통부

이로 인해 실제 국고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 미준수 사례 】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명	국고보조 비율		총사업비 (A)	국고지원 (B)	비 고 (1,000억원 초과 지원분)
		시행령	실제 (B/A)			
광역도로	초정~화명	50%	40.7%	3,006	1,224	224억원(추진 중)
광역도로	다사~왜관	50%	48.4%	2,533	1,226	226억원(추진 중)
광역도로	조야~동명	50%	38.8%	3,605	1,399	399억원(추진 중)
광역도로	동부간선도로	50%	33.8%	3,850	1,300	300억원(사업완료)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과 관련된 국고지원 보조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부가 임의로 국고 보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에 원활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국고 보조 비율을 명시하는 경우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이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점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음.

다만, 법률에 국고 보조 비율을 명시하는 경우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워지며,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실제 국고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 비율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587호)이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 중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다.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국가보조금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보조금법」 등 여러 법령에서 보조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므로 광역교통시설 보조율도 기존 법률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고지원 비율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사업 및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기획재정부

현재 광역도로 중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만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다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임. 국고보조율 법률에 규정할 경우 재정경직성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 법령 규정과 예산편성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광역도로 사업 현황

○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상 광역도로 추진 현황('24.6 기준)

* 총 25개 사업 중 완료 4개, 추진중 사업 11개, 미착수 사업 10개

구 분	사업주체	연장 (km)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추진현황	비고
			전체	국고			
합 계 (25)	-	146.6	37,492	14,777.5	-	-	
계룡신도안~대전세동	대전,계룡	1.9	243	120	'17~'21	사업완료('21.7)	
국도7호선확장	울산	4.6	974	486	'14~'22	사업완료('22.3)	
동부간선도로	서울,의정부	9.5	3,850	1,300	'04~'20	사업완료('21.12)	2천억 초과
천왕~광명시계	시흥	6.1	1,312	497	'01~'21	사업완료('22.9)	(SH) 315억
검단~대곡	인천,김포	3.0	464	232	'19~'27	추진 중 (설계)	
태릉~구리IC	서울,구리	4.8	1,730	257	'09~'27	추진 중 (설계)	(LH) 1,098억
벌말로	LH	8.0	2,530	-	'20~'26	추진 중 (설계)	국비지원없음
봉오대로~김포공항	LH	2.4	860	-	'20~'26	추진 중 (설계)	국비지원없음
대구조야~칠곡동명	대구,칠곡	7.9	3,605	1,399	'20~'27	추진 중 (설계)	2천억 초과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주,전남	15.4	1,162	581	'21~'25	추진 중 (설계)	
인천서구거침도~약암리	인천,김포	6.5	574	290	'18~'26	추진 중 (공사)	
동김해IC~식만JC	부산,김해	4.6	849	424	'10~'24	추진 중 (공사)	
초정~화명	부산,김해	3.6	3,006	1,224	'03~'26	추진 중 (공사) *부산구간완료('12년)	2천억 초과
대구다사~왜관	대구	9.6	2,533	1,226	'16~'27	추진 중 (공사)	2천억 초과
서대전IC~계룡두계3가	대전	5.5	667	333.5	'17~'25	추진 중 (공사)	
부산미음~부산가락	부산,김해	3.8	1,867	934	미정	준비 중	
강서첨단물류도시남북(1축)	부산,김해	2.1	791	396	미정	준비 중	
웅촌~용당	울산,양산	6.3	1,414	707	미정	준비 중	
대구안심~경산임당	대구	3.1	806	403	미정	준비 중	
대구다사~다산	대구,칠곡	3.9	1,300	650	미정	준비 중	
대구방촌~경산대정 *금호강변 도로개설	대구	8	2,320	1,000	미정	준비 중	2천억 초과
대구시계~경산압량	대구,경산	5	890	445	미정	준비 중	
광주대촌~나주금천	광주,전남	5.5	448	224	'24~'30	준비 중	
대전대덕특구~세종금남면	대전,세종	8.1	1,766	883	'25~'33	준비 중	
대전와동~신탄진동	대전	7.4	1,531	766	'24~'32	준비 중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 2

광역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기준

○ 예산지원 기준은 기재부 내부 기준임

□ 2008~2015년

- 광역도로는 대부분 지방도로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설·관리해야하나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사안으로, 한정된 재원 하에서 다수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차등화가 필요함. 이에 노선 길이, 총사업비에 따른 국고 보조의 차등을 도입함
- 총사업비 2,000억원 한도에서 50%를 지원함

유 형	도로관리청	지원기준 및 원칙	비 고
광역도로	해당 지자체	■ 총사업비(설계·공사·보상) 2,000억원 한도에서 50% ■ 유지관리비 : 지자체 100% ■ 수도권 5km, 지방권 10km 이내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로

□ ~2016년

- 총사업비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국고를 지원함

유 형	도로관리청	지원기준 및 원칙	비 고
광역도로	해당 지자체	■ 총사업비(설계·공사·보상) 2,000억원 한도에서 50% * 단, 총사업비 2,000억원 초과분은 10% ■ 유지관리비 : 지자체 100% ■ 수도권 5km, 지방권 10km 이내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로

□ 2017년 이후

- 총사업비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5%로 상향함

유 형	도로관리청	지원기준 및 원칙	비 고
광역도로	해당 지자체	■ 총사업비(설계·공사·보상)의 50% * 단, 총사업비 2,000억원 초과분은 25% ■ 유지관리비 : 지자체 100% ■ 수도권 5km, 지방권 10km 이내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로

※ 자료: 기획재정부